



## 겸임교원 임용 규정

규정번호	2-3-13
제정일자	2001. 3. 1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겸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<2015.11.27 제정>

**제2조(정의)** 겸임교원은 국가기관,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관령분야의 전문지식을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임용자격)**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석사학위 이상 졸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 단, 학사학위 소지자는 교육경력 2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.

1. 담당하고자 하는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
2.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고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단, 교과목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총장의 허가에 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3.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

**제4조(임용직위)** 겸임교원의 임용직위는 겸임교수로 한다.

**제5조(임용절차)** 겸임교원의 임용절차는 공개채용 또는 학과의 추천[별지 1]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<2018.11.13. 개정>

**제6조(임용기간)** ① 겸임교원의 신규임용은 1년으로 하며 이후 평가 등에 의하여 재임용은 1.2.2년으로 하되 총3회에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. <2016.06.13. 개정>

② 임용기간 만료 겸임교원의 1차 재임용 평가는 학과의견서[별지 2]로 하며 이후 평가는 재임용 평정표[별지 3]에 의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인 교원을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. <2016.06.13.신설, 2018.11.13.,2021.12.23 개정>

③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

**제7조(제출서류)** 겸임교원의 신규 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1부(학과 추천서)
2. 임용지원서 1부.
3. 학력 및 성적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.
4. 재직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.
5. 소속 기관장의 겸직 동의서 1부.
6.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

**제8조(보수 및 처우)** 겸임교원의 보수 및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휴직)** 겸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

**제10조(면직)** 겸임교원은 임용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 시킬 수 있다.

1.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
2. 겸임교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3.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**제11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겸임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이 내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단, 제5조 임용기간은 재직기간 5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겸임교원임용내규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내규에 의하여 임용된 겸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 6조 제1항의 재임용기간의 적용은 2015년 9월 1일자로 신규임용 된 겸임교원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원은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## 겸임교원 추천서

학과명		구분		겸임교원		
인적 사항	성명			생년월일	년 월 일 (만 세)	
	본직기관명			전화번호		
	직위			핸드폰		
	현주소					
학력 사항	구분	기간	학교명	학과	전공	학위명
	학사	... ~ ...				
	석사	... ~ ...				
	박사	... ~ ...				
주요 경력	기간	기관명	직위	비고		
	... ~ ...					
	... ~ ...					
	... ~ ...					
	... ~ ...					
	... ~ ...					
담당 과목	담당과목		담당시수	비고		
추천 사유						

20 년 월 일

위와 같이 겸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추천합니다.

과 학과장 : (인)

소속학과 교수 동의 날인


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

## [별지 2]

## 겸임교원 재임용 의견서

학 과		직 위	겸임교수	성 명	
의 견 항 목	강의능력				
	교수 간 인화관계				
	학과행사참여도				
	대학발전기여도				
	취업지도 및 실적				
	종합의견				
재임용의견		재임용 동의 ( )	재임용 부동의 ( )		

한국어

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## 과 학 과 장 : (인)

소속학과 교수 동의 날인


신안산대학교총장귀하

[별지 3]

### 겸임교원 재임용 평정표

학 과		직 위	겸임교수	성 명	
-----	--	-----	------	-----	--

평정항목	배 점	평정점수					비 고
		A(매우우수) (10점)	B(우수) (8점)	C(보통) (6점)	D(미흡) (4점)	E(매우미흡) (2점)	
교수 간 인화관계	10						
학과행사참여도	10						
학과(대학)발전기여도	10						
강의설문	35 (학기평점× 7점)						재임용기준일 전학기까지의 평점
취업추천	35 (취업추천인 원×5점)						(별지 4참조)
합 계	100점					점	

※재임용기준 : 80점 이상(교양과는 취업추천항목 미포함 후 환산점수적용 / 평정점수\*1.54점)  
※평정점수 점수 산정 시 소수점첫째자리에서 반올림

20 년 월 일

위와 같이 재임용 평정표를 제출합니다.

과 학과장 : (인)

소속학과 교수 동의 날인


신안산대학교총장기하

[별지 4]

### 취업추천 확인서

학 과		직 위	겸임교수	성 명	
-----	--	-----	------	-----	--

○ 취업추천

번호	성 명	졸업(예정) 연도	업체명	취업부서	취업일	비 고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
※ 해당 경임교원이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.

위와 같이 취업추천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작성자 : (인)

학과장 : (인)

신안산대학교총장귀하